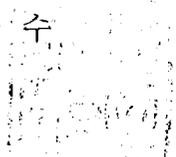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56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: '99. 10. 26 .

제출자: 달성군수



1. 개정이유

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켜 보다 적은 비용으로 『질 높은 서비스』를 통해 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함

2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
- 대구광역시달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3. 주요골자

- 종합사회복지관 설치·목적·명칭·위치(안 제1,2조)
- 복지관 사업내용(안 제3조)
- 시설의 이용 및 제한(안 제4조)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 붙임

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·운영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능력 배양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(이하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명칭 및 위치) 복지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달성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북리 1-104 번지에 위치한다.

제 3 조(복지관의 사업내용)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정복지사업 : 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, 가정문제 종합 상담, 자원봉사실 운영, 직업·부업 기능훈련, 취업·부업안내(무료 직업 안내소 운영), 부녀자 교양교육 및 취미교실, 보건의료 서비스
2. 아동복지사업 :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, 어린이 공부방 운영, 어린이 기능교실 운영, 자모상담 및 교육, 유아보육 교실
3. 청소년복지사업 : 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, 청소년문제 예방치료, 기능교실 운영, 근로청소년 사회교육, 도서 및 독서실 운영
4. 노인복지사업 : 노인부업실 운영, 불우노인결연, 사회교육 및 여가 선용지도, 노인가정 자원봉사원 파견
5. 장애인복지사업 : 재가 장애인서비스 알선, 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
6. 지역복지사업 : 주민사회 교육, 자원봉사자 양성, 후원자 개발, 주민 취미교육, 사회조사, 주민편의 시설 제공
7. 기타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

제 4 조(시설의 이용 및 제한) ①복지관의 시설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주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.

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전염성질환자, 정신질환자
 2.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 3. 기타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제 5 조(준용규정) 복지관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달성군사부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